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심사보고

| | |
|----------|------|
| 의안 번호 | 3596 |
|----------|------|

2026년 4월 22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자 : 2026년 3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6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실장)

가. 제안이유

○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1월 18일자로 위탁기관인 서울시·성남

시와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본 관리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를 설립(출자)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 보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사업내용

< 위례선 트램 사업개요 >

- 주 관 : 서울시, 성남시
- 건 설 비 : 3,503억원 (LH공사 75%, SH공사 25% 분담)
- 사업규모
 - 총 연장 5.4km_(본선)마천~북정(4.7km), (지선)남위례(0.7km)
 - ※ 서울시 60.7% (3.28km) / 성남시 39.3% (2.12km)
 - 정거장 12개소(송과 7, 성남 5), 차량 10편성(5칸), 기지 1개소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개통일로부터 5년 ('26.12월 개통 예정)
- 운영비 : 연평균 240억원(추정) ※ 위탁기관 행정구역 거리비율 분담
- 영업시간 : 05:30 ~ 25:00(19시간 30분)
- 운행시격 : (본선) (첨두) 5~10분, (비첨두) 10~15분
(지선) (첨두) 15분, (비첨두) 20분
- 운임제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서울버스요금제와 동일
- 예상수요 : 일평균 최대 2.8만명('30년 기준) ※ 市도기본의 기본계획('20.9.)

<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개요 >

- 협약주체 : (위탁)서울시·성남시 ↔ (수탁)서울교통공사
- 협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26.12월 개통 예정)
- 협약사무 :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 사업시설 유지보수 등
- 운영방식 : 트램 전문운영 자회사 설립 및 운영

< 자회사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

【타당성 검토 개요】

✓ (수행)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25.2월 ~ 8월 / (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적정성)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및 법률적 타당성 확보
 - 한정된 위탁기간 및 공사의 노선과 비연계되는 별도의 노선 등 특수성 고려

- 협약 조건 내 효율적,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필요
- 트램은 관련 법령에서 궤도사업으로 분류 및 기준 충족
- (수지분석) 자회사 운영방식이 공사 직영 대비 5년간 160억원 수지 개선
 - 운송수익은 동일하나, 자회사 운영시 인건비 절감 구조로 수지 개선
- (재원조달) 자본금(20억원) 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적정
 - 출자한도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24조원)의 100분의 10 이내
 - 규모산정 : 개통 전 사업비 분기 후불 지급에 따라 3.5개월 운영비 책정

〈 운영자회사 설립(안) 〉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 사 명 : (가칭) 위레트램운영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트램 차량기지 종합관리동)
 - 자 본 금 : 20억원(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 조직체계 : 사장, 1본부, 3처(7팀)
 - 상임이사 : 대표이사 및 본부장(*법인신고 시 결정)
 - 비 상 임 : 감사(당연직), 기타비상무이사(당연직)
 - 인 력 : 93명(임원 2명, 직원 91명) ※ 공사 지원인력 2명(한시정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자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
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금년말 개통예정인 위례선 운영을 위해 '24년 11월 18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및 성남시간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이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례선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칭 '위례선트램운영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 협 약 명 :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 위탁기관 : 서울시·성남시
- 수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협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26.12월 개통 예정)
- 협약사무 :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 사업시설 유지보수 등
- 운 영 비 : 연평균 240억원 추정

※ 참고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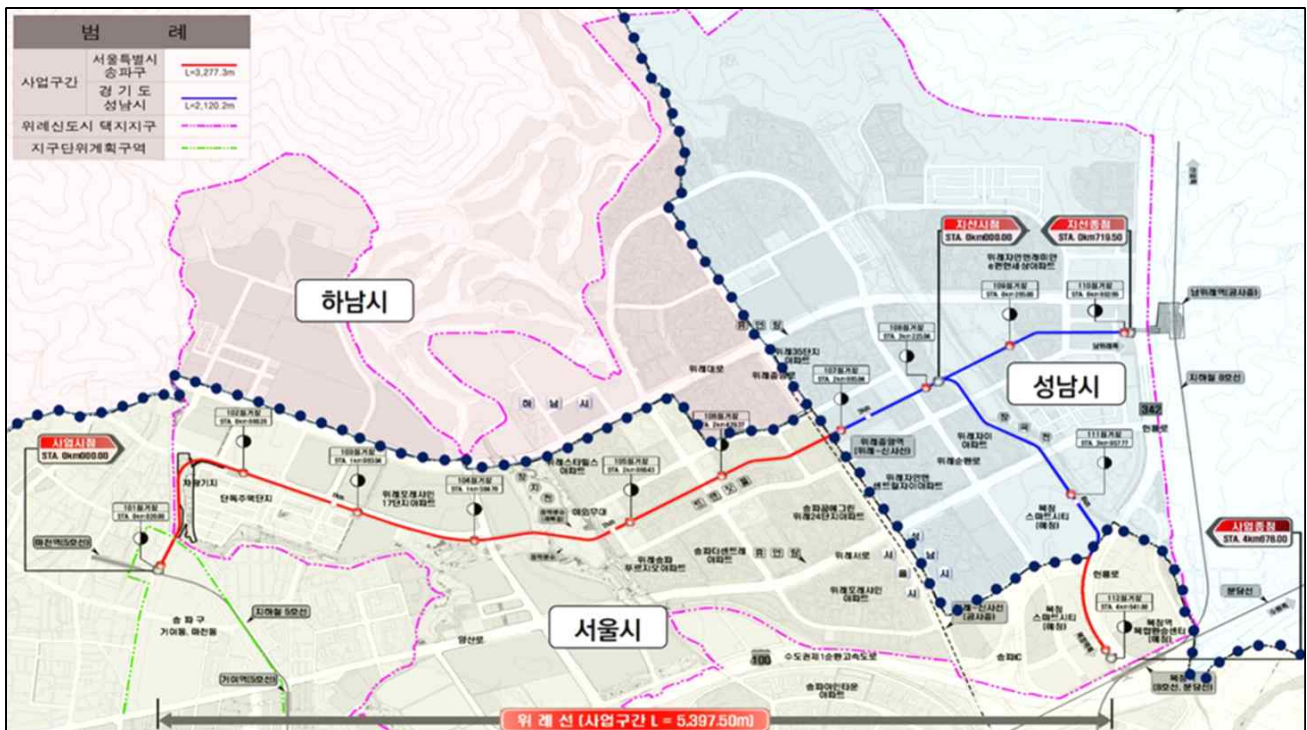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위례선 추진경위 및 현황

- 위례선은 위례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노선(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으로 총사업비(3,503억원) 전액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분담금¹⁾으로 충당함

※ 참고 : 위례선 노선도



- 위례선 건설은 '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B/C 0.75) 등으로 10여년간

1) LH 75%, SH 25%

답보 상태였다가 '18년 서울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1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례선은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트램(노면전차) 노선으로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하였고, 4월 현재 철도종합시험운행 중으로 시설물과 시스템 안정성 및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 향후 위례선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남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효율적인 위례선 운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 참고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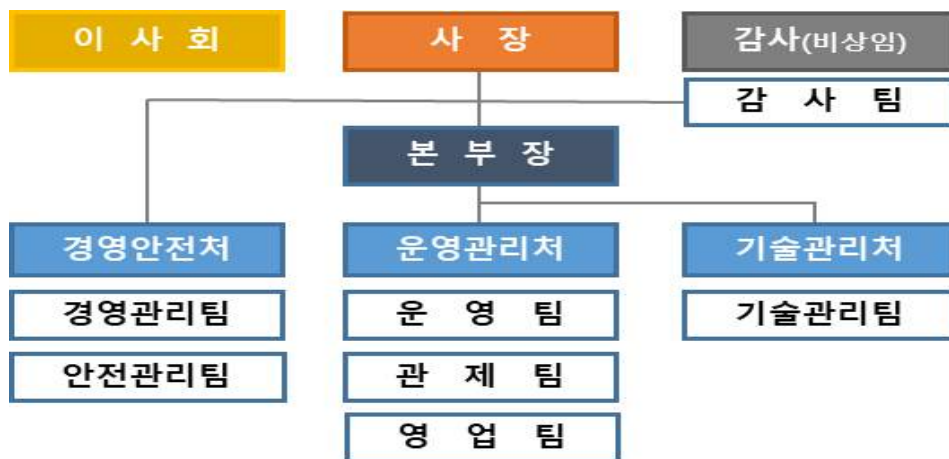
- '08.0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 (국토교통부)
- '15.0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18.06 : 공공주도사업 추진 합의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20.03 : 공공주도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서울시, LH 등 7개 기관)
- '20.10.29 : 기본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 '22.11.28 :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 '23.04.13 : 위례선 트램 착공식
- '23.04.26 : 위례선 트램 운영방침 수립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 '24.11.08 :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업무 승인 (서울시)
- '24.11.18 :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 '26.12. : 개통예정

■ 자회사 설립 개요

- 서울교통공사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임원 2명을 포함한 정원 93명과 1본부 3처 7팀의 조직체계(공사 지원인력 2명 별도)로 운영될 예정임

※ 참고 :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안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사명 : (가칭) 위레트램운영주식회사
- 자본금 : 20억원(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 인력 : 총 93명(임원 2명, 직원 91명) ※ 공사 지원인력 2명 별도
- 조직체계 : 사장, 1본부, 3처(7팀)



■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타당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2)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3)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4)에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⁵⁾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4항6)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제6항7)에서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⁸⁾에서는 해

-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3)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하생략>
-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8호(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6)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② (생략)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자회사로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⁹⁾ 위례선 트램 운영 주식회사 설립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자본금 20억원을 100% 출자하고 출자 한도¹⁰⁾ 또한 준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위·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가능¹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례선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자회사 업무 중 일부 외주용역 관련

-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위례선 운영을 공사직영 방식과 자회사 방식으로 나누고, 공사직영 방식일 경우 소요인원을 165명, 자회사 방식은 106명으로 산출하였음

자회사 방식에서는 토목, 궤도, 건축, 신호, 통신, 전기, 기계, 차량 등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9) 위례선 트램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p126 (지방공기업평가원 '25년 8월 발행)

10) '25년도 서울교통공사 부채비율(부채/자본) 96.6%, 자본금 245,781억원

11)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수탁기관은 본 협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관 간 합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단,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위탁기관은 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수탁기관이 자회사에 본 사업의 위임한 경우, 자회사는 협약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및 권한을 승계한다.

소요인원의 차이가 발생함(※인력운영은 붙임자료 참고)

위례선의 경우 레일(룩셈부르크), 레일 분기기(독일), 저소음·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포르투갈), ED¹²⁾교량 케이블(중국) 등에 외산자재를 사용하였고, 차량은 국내 최초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는 등 기존 유가선 도시철도와는 시설, 차량, 운영방식 등이 다르며, 특히 다국적 외산자재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¹³⁾된 바 있음

자회사를 설립하여 토목, 궤도, 전기, 기계 등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 공사직영시 보다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55명→44명¹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국내 최초 배터리 방식인 위례선 유지관리를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시설안전과 유지보수·정비 노하우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최근 노란봉투법¹⁵⁾ 시행으로 현재 공사 자회사 중 일부에서

12) ED교(엑스트라도즈 교:Extradosed Bridge) : 거더교의 부모멘드 구간내 내부 또는 외부긴장재를 배치하고 긴장력을 도입해 주거더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교량형식

13) '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25.11.13.)

14) 공사직영시와 자회사 설립시 기술정비 업무분장 비교(위례선 트램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 공사 직영 운영시 | | | 자회사 설립시 | | |
|--------------|-----------|----|-------------|-------------------------|----|
| 수행방법 | 직무 | 인원 | 수행방법 | 직무 | 인원 |
| 직영 (내부수행) | 기술정비소장 | 1 | 용역 (외주화) |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총괄 관리자 | 1 |
| | 시설정비부 부장 | 1 | | 시설유지보수 관리자 | 3 |
| | 토목궤도 | 12 | | 토목/궤도/건축 | 11 |
| | 건축 | 8 | |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자 | 3 |
| | 시스템정비부 부장 | 1 | | 신호/통신/전기/기계 | 7 |
| | 신호 통신 | 8 | | 차량정비 등 총괄관리자 | 1 |
| | 전기 기계 | 8 | | 일산/월상/수선 | 12 |
| | 차량 | 16 | | 차량관리 | 3 |
| | 계 | 55 | | 입환 | 3 |
| | | | 계 | 44 | |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례선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특히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 동의안에는 유지보수·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회사가 위례선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자회사 인력규모 관련

- 자회사 인력규모와 관련하여 '24년 11월 위·수탁 협약에서는 인력규모를 104명¹⁵⁾으로 산정하였으나, '25년 8월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106명¹⁷⁾으로 추산했음에도 동 동의안에서는 서울시가 별도 용역¹⁸⁾을 통해 산정한 인력규모(95명¹⁹⁾)를 적용함
- 자회사의 인력규모가 위·수탁 협약과 용역결과 마다 다소 상이하
며 인력규모에 따라 자회사 운영비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시행 2026. 3. 10

16)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제6조

① 본 사업 운영인력 총원은 104명으로 한다, 단, 운영인력 총원은 적정인력에 대한 용역 및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력채용 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7) 위례선 트램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p61~65 (지방공기업평가원 '25년 8월 발행)

18) 위례선(트램) 및 진접차량기지 운영조직의 적정 운영 인력 산정 타당성 검토 용역(한국지방회계연구원, '2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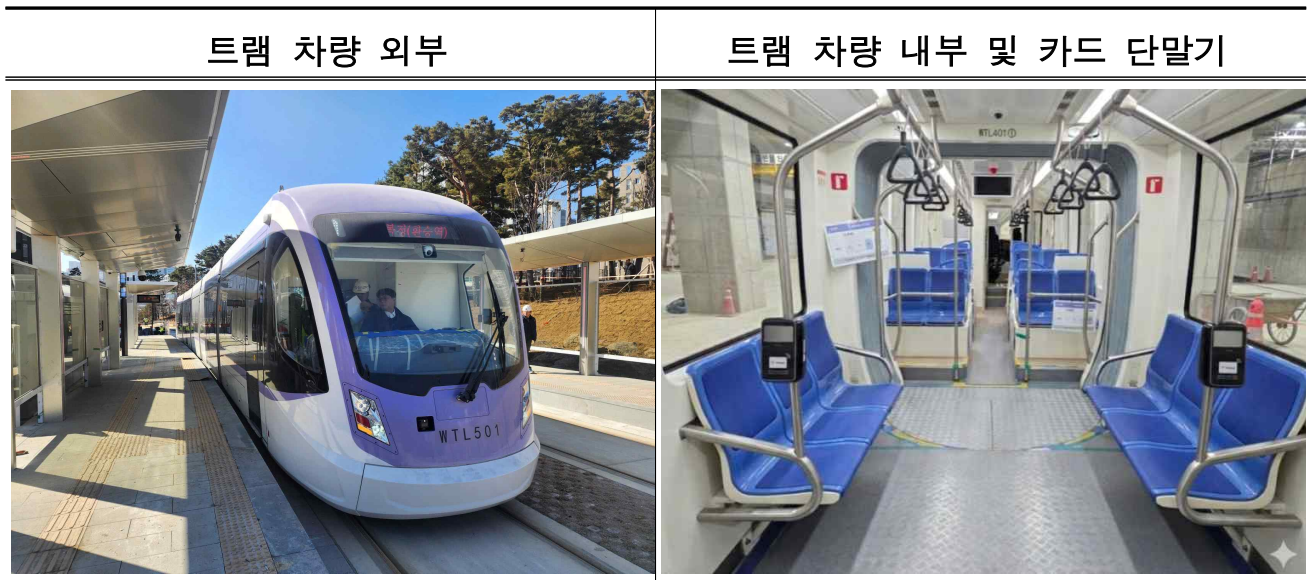
19) 95명 : 93명(임원 2명, 직원 91명) + 2명(공사지원 인력)

향후 실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력규모의 조정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례선 요금징수 및 정산 관련

- 위례선은 역사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도시철도와 달리 트램 내부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혼잡시간대에 승객의 카드 태그를 트램 기관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부정승차 발생이 우려되는 바 위례선 개통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홍보, 캠페인, 제도 및 단속 등 개통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위례선 트램 외부 및 내부



- 한편 위·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매월 징수된 운임 수입금을 익월 영업일 기준 7일내 입금²⁰⁾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위

레선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²¹⁾를 적용할 계획인 만큼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위레선 개통전 요금 및 정산 체계 확정을 통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금년 12월 개통 예정인 위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관련법령,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및 위·수탁 협약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회사 업무 외주화로 인한 안전확보, 자회사 인력규모 조정, 요금 징수와 정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향후 개통과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

20) 「위레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제13조(운임의 징수 및 입금)

①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 및 위탁기관이 정한 운임을 위레선 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월 징수된 운임 수입금을 “거리비율”로 배분하여 위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익월 영업일 기준 7일 내 각 입금한다.

21) 위레선 트램 기본요금 : 1550원

통합환승할인요금 : 기본요금(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 + 거리추가요금(총 이동거리가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 5km당 100원)

※ 참고 : 공사 직영 및 자회사 방식의 인력운영(위례선 트램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 부서 | 팀 | 직무 | 인원 | | 공사 대비 자회사 인원 증감 |
|-----------|------------|-----------------|-----------|------------|-----------------------|
| | | | 공사 직영시 | 자회사 설립시 | |
| 사장 | | | - | 1 | +1 |
| 부부장(본부장) | | | 1 | 1 | - |
| 감사팀 | | 팀장 | - | 1 | +1 |
| | | 경영기술감사 | - | 2 | +2 |
| 안전관리처 | 처장 | | 1 | 1 | - |
| | 안전관리팀 | 팀장 | 1 | 1 | - |
| | | 안전 품질 | 1 | 1 | - |
| | | 방재 | 2 | 2 | - |
| 기획 경영처 | 처장 | | 1 | 1 | - |
| | 기획팀 | 팀장 | 1 | 1 | - |
| | | 기획 법무 | 1 | 2 | +1 |
| | | 예산 회계 | 1 | 2 | +1 |
| | 경영지원팀 | 팀장 | - | 1 | +1 |
| | | 인사 노무 | 1 | 1 | - |
| | | 총무 자산 | 1 | 2 | +1 |
| | | 급여 교육 부속사업 | 1 | 1 | - |
| 운영처 | 처장 | | 1 | 1 | - |
| | 운영팀 | 팀장 | 1 | 1 | - |
| | | 관제/승무지원 | 2 | 2 | - |
| | | 운전계획/승무교육 | 4 | 4 | - |
| | | 지도 운용 | 3 | 3 | - |
| | | 본선 기관사 | 55 | 46 | -9 |
| | 관제팀 | 팀장 | 1 | 1 | - |
| | | 열차/기지/기술 | 8 | 6 | -2 |
| | | 관제/승무지원 | 4 | 3 | -1 |
| | | 관제행정 | 1 | 1 | - |
| | 영업팀 | 팀장 | 1 | 1 | - |
| | | 수입금 관리 | 1 | 1 | - |
| | | 발매기. 마케팅, 민원 | 2 | 2 | - |
| 기술처 | 처장 | | 1 | 1 | - |
| | 시설 계획팀 | 팀장 | 1 | 1 | - |
| | | 케도 토목 | 1 | 1 | - |
| | | 기계 건축 | 2 | 2 | - |
| | 시스템 계획팀 | 팀장 | 1 | 1 | - |
| | | 통신 전산 | 2 | 2 | - |
| | | 전기 신호 | 2 | 2 | - |
| 차량 | | 2 | 2 | - | |

| 부서 | 팀 | 직무 | 인원 | | 공사 대비 자회사 인원 증감 | |
|---------------------------|------------|-------|-----------|------------|-----------------------|--|
| | | | 공사 직영시 | 자회사 설립시 | | |
| 기술정비사 업소 ¹⁾ | 소장 | | 1 | - | -1 | |
| | 시설 정비부 | 부장 | 1 | - | -1 | |
| | | 토목 케도 | 12 | - | -12 | |
| | | 건축 | 8 | - | -8 | |
| | 시스템 정비부 | 부장 | 1 | - | -1 | |
| | | 신호 통신 | 8 | - | -8 | |
| | | 전기 기계 | 8 | - | -8 | |
| | | 차량 | 16 | - | -16 | |
| | 총원 | | | 165 | 106 | |

- 1) 자회사 설립시 기술정비사업소 업무는 외주(44명)로 운영
- 2) 공사 직영시 기획경영팀은 단일 조직으로 구성
- 3) 정거장 및 차량 청소는 공사 직영 및 자회사 운영 방식 모두 별도 외주(공사직영 33명, 자회사 32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3596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1월 18일자로 위탁기관인 서울시·성남시와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나. 본 관리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를 설립(출자)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 보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례선 트램 사업개요

- 주 관 : 서울시, 성남시
- 건설비 : 3,503억원 (LH공사 75%, SH공사 25% 분담)
- 사업규모
 - 총연장 5.4km_(본선)마천~북정(4.7km), _(지선)남위례(0.7km)
 - ※ 서울시 60.7% (3.28km) / 성남시 39.3% (2.12km)
 - 정거장 12개소(송파 7, 성남 5), 차량 10편성(5칸), 기지 1개소

< 위례선 트램 노선도 >



나. 운영개요

- 운영기간 : 개통일로부터 5년 ('26.12월 개통 예정)
- 운영비 : 연평균 240억원(추정) ※ 위탁기관 행정구역 거리비율 분담
- 영업시간 : 05:30 ~ 25:00(19시간 30분)
- 운행시격 : (본선) (첨두) 5~10분, (비첨두) 10~15분
(지선) (첨두) 15분, (비첨두) 20분
- 운임제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서울버스요금제와 동일
- 예상수요 : 일평균 최대 2.8만명('30년 기준) ※ 市도기본의 기본계획('20.9.)

다.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주체 : (위탁)서울시·성남시 ↔ (수탁)서울교통공사
- 협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26.12월 개통 예정)
- 협약사무 :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 사업시설 유지보수 등
- 운영방식 : 트램 전문운영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라. 자회사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 검토 개요】

✓ (수행)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25.2월 ~ 8월 / (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적정성)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및 법률적 타당성 확보
 - 한정된 위탁기간 및 공사의 노선과 비연계되는 별도의 노선 등 특수성 고려
 - 협약 조건 내 효율적,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필요
 - 트램은 관련 법령에서 궤도사업으로 분류 및 기준 충족
- (수지분석) 자회사 운영방식이 공사 직영 대비 5년간 160억원 수지 개선
 - 운송수익은 동일하나, 자회사 운영시 인건비 절감 구조로 수지 개선
- (재원조달) 자본금(20억원) 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적정
 - 출자한도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24조원)의 100분의 10 이내
 - 규모산정 : 개통 전 사업비 분기 후불 지급에 따라 3.5개월 운영비 책정

마. 운영자회사 설립(안)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 사 명 : (가칭) 위레트램운영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트램 차량기지 종합관리동)
 - 자 본 금 : 20억원(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 조직체계 : 사장, 1본부, 3처(7팀)
 - 상임이사 : 대표이사 및 본부장(*법인신고 시 결정)
 - 비 상 임 : 감사(당연직), 기타비상무이사(당연직)
 - 인 력 : 93명(임원 2명, 직원 91명) ※ 공사 지원인력 2명(한시정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별첨 :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운영(안)_이사회 부의 안건 1부.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고동오 (☎ 02-2133-4352)

서울교통공사 철도사업처 박기영 (☎ 02-6311-2270)